

IV. 지원자격

1 | 공인영어 성적 기준

구 분	모집단위	공인영어 성적 기준
•일반편입 •학사편입	전체 모집단위 (아래 학과 제외)	원서접수 마감일(2018. 1. 5.)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있는 자 [TOEIC, TEPS, TOEFL(iBT) 중 택 1] -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 TOEIC 및 TOEFL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간호학과 수의학과	TOEIC 850점, TEPS 700점, TOEFL(iBT) 99점 이상인 자(택 1)
	영어교육과	TOEIC 800점, TEPS 641점, TOEFL(iBT) 91점 이상인 자(택 1)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스포츠과학부	해당없음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체 모집단위	해당없음
•연계교육과정	전체 모집단위 (행정학과 제외)	해당없음
	행정학과	원서접수 마감일(2018. 1. 5.)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있는 자 [TOEIC, TEPS, TOEFL(iBT) 중 택 1] -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 TOEIC 및 TOEFL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2 | 일반 편입학(정원 내)

전적(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요건(나, 다, 라) 중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모집학년: 3학년(※ 수의학과는 1학년)

나.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년제 대학(학과)에서 2년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다. 국내·외 4년제 대학(방통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¹⁾) 이상 수료²⁾하고 6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원서 접수 개시일 현재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나,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2005학년도 이전 삼척대학교 입학자는 지원 가능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 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 전적(출신)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취득학점은 인정),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함
2)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지원 시 전적대학의 2년(4학기) 이상 수료 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기 바람

3 | 학사 편입학(정원 외)

전적(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나' 요건을 충족한 자

- 가. 모집학년: 3학년(※수의학과는 1학년)
- 나. 학사 학위 소지(예정)자(학점 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 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에 한함]

4 | 농어촌지역 학생 편입학(정원 외)

전적(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요건(나, 다) 중 하나를 충족한 자

- 가. 모집학년: 3학년
- 나.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지역 학생으로 입학한 자
- 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태백시 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유형 I> 또는 <유형 II>에 해당하는 자

<유형 I> 학생이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 II>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의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 요건 등을 심사

사 유	부모에 해당하는 자
○ 부모의 사망·실종	○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의 이혼·재혼	○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 입양자	○ 입양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 자격 부여

* 2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도서벽지 포함) 초·중고등학교이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도서·벽지 포함)지역이어야 함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편입학(정원 외)

전적(출신)대학의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나' 요건을 충족한 자

- 가. 모집학년: 3학년
- 나.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고 우리 대학의 2018학년도 대학 신입학(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지원자격을 갖춘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6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학생 편입학(정원 외)

가. 모집학년: 3학년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9호에 따라,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소재 대학 제외) 또는 산업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한 전문대학에서 해당 교육과정(이하 “연계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모두 이수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연계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 이후 해당 대학에 입학한 자

7

수의학과 선수과목

가. 필수 이수사항

- 일반(대학)화학 2과목(6학점), 일반(대학)생물학(생명과학) 2과목(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선수과목별 6학점, 총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선수과목 인정 범위

필요학점	선수과목	인정과목(2018)	불인정 과목
선수과목별 6학점 이상	일반(대학)화학	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유기화학, 유기생화학, (유기)생(물)화학	생활과학, 분석화학, 천연물화학
	일반(대학)생물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물공학, 생물과학, 세포(생물)학	생물약학, 생(유기)화학, 생물탐구교육, 해부(생리)학, 생리학, 미생물학

※ 정규학기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

※ 교과목명 앞 또는 뒤에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과목으로 함.

- 교과목명 앞: 일반, 기초, 고급, 대학, 고등, 교양, 응용, 이공계, 학부, 기축, 동물
- 교과목명 뒤: 개론, 이해, 추론, 특강(특론), 연습, 실습, 실험, 학, 입문, 및 의,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예) 기초화학2, 응용생물학II, 일반화학 및 실습II, 유기화학 및 실습, 고급분자생물학 등

※ 교과목명 앞에 특정(전문)분야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과목으로 함.

- 교과목명 앞: (의)약(품), 식품, 어류, 해양, 환경, 의공, 향장, 농업, 식물
(예) 약(품)화학, 어류생물학, 식품화학, 환경생물학개론, 응용환경생물, 해양생명, 농업생물화학 등

※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 과목이라 함은 유사선수과목 인정신청서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성적증명서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목을 의미

다. 유사 선수과목 인정 여부 사전 심사

1) 취 지

: 인정받고자 하는 선수과목이 본교에서 정한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원서 접수 전에 심사하여 통보함으로써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2) 제출 서류

: 유사 선수과목 인정 신청서(서식 5, 각 과목당 1부),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신청확인서 (이수 중일 경우), 강의계획서, 교수요목 등 해당 교과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

3) 제출 기간: 2017. 12. 14.(목) ~ 12. 19.(화)

4) 보내는 곳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대학본부 5층 입학과 편입학업무 담당자
(우 24341)

5) 결과 통보: 2017. 12. 29.(금) 18:00 이전 개별 통보(통보 방법: 입학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6) 유의사항

: 인정받고자 하는 선수과목이 “선수과목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선수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선수과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